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465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지환

별지